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결: '21.2.22.)과 관련하여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처분을 이해하기 쉽고 단순·명확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중처분 차수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집행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어 차수적용에 대한 규정 신설(안 별표 1의3, 1의4, 2, 4, 9, 13)

나. 가중처분의 요건인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적용시점이 “위반행위를 한 날”로 규정되어 있어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끔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규정(안 별표 1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민권익위원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호나목 전단 중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을 “최근”으로, “위반행위로”를 “유형의 위반행위로”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경우”를 “경우 기간의 계산은”으로, “한”을 “받은”으로, “처분 후에”를 “행정처분 후”로,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의4 제1호가목 단서 중 “(3개월)”을 “(1년)”으로, “3개월을 말한다”를 “1년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4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9,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경우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마.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조종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 당시에 이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 또는 운항에 필요한 면허에 대해서만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바.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위반 당시에 이용한 해당 조종면허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면허취소			
나.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다.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법 제13조 제1항제3호	면허취소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면허취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법 사) 「수산 자원관리 법」					
	4) 이 법을 위반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경우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라.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3호 의2	면허 취소				
마.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 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 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면허취소				
바. 조종 중 고 의 또는 과실 로 사람을 사 상(死傷)하 거나 다른 사 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를 입힌 경우	1) 고의 또는 과실 로 사람을 죽게 하 거나 사람에게 3 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 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고 의로 다른 사람에 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6호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2) 과실로 다른 사 람에게 3주 미만 의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의사가 진단 한 상해를 입히거 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 해를 입힌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6호	경고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 어 조종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7호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아.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 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 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8호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자.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수상레 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제13조 제1항제9호	경고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대행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법 제14조제2	지정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항제1호의2	취소			
다.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2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29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대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제1호	지정 취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	법 제38조제2항제1호의2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8조제2항제2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제2항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8조제2항제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마. 제2호 개별기준 다목 2), 3)의 경우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1조제1호	등록 취소			
나.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및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법 제51조제2호 · 제2호의2	등록 취소			
다.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死狀)한 경우	1) 고의로 사람을 상한 경우	법 제51조제3호	등록 취소			
	2)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등록 취소	
	3) 과실로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	법 제51조제3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등록 취소
라.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30조, 제32		법 제51조제4호	업무정	업무정	등록	

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		지 1개월	지 2개월	취소	
마.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등록 취소	
바. 법 제43조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1조 제6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사. 법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1조 제6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